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성매매는 돈으로 인간의 성을 사는 인권침해 범죄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성매매는 잘못된 성의식을 만들고 건강한 신체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인신매매, 성적 학대와 유린, 강간, 폭행, 협박과 공갈 등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 숙식, 긴급구조, 학업·의료·법률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은 아래로 연락 주세요!

도움 제공 기관

☎ 청소년 사이버성매매 상담(십대여성인권센터)

- 전화상담(02-6348-1318 / 010-3232-1318)
- 카카오톡, 라인 cybersatto
- 홈페이지 www.10up.or.kr
- 이메일 : 10up@hanmail.net

☎ 여성 긴급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66

☎ 헬프콜 청소년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88

- 1366, 1388은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연결되며, 특정지역으로 직접 연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번호 + 1366 / 1388"로 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신청서 제출

☎ 문의 : 02-2100-6408~9

📍 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이메일 : cyprotection@korea.kr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아래의 경우 신고 하세요!!

-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꼬여서 성행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보도방 실장, 업주 등
- 아동·청소년의 선배, 선생님, 부모 등이 위계(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예** 모텔 주인 등
-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시켜주는 사람 **예** 보도 삼촌, 실장, 친구 등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후기 사이트 등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 아동·청소년과 돈, 밥, 잘 곳 등의 댓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 아동·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댓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을 드립니다!

Q

신고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청소년이란 연 나이 19세 미만('19년 기준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A

Q

포상금은 신고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네. 신고한 사건이 기소나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경우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단속을 하는 공무원, 범죄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요.

A

Q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도 가능해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거나, 신고전화(☎112) 또는 경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신고해요.

A

Q

포상금은 어떻게 신청해요?

A

수사기관에 신고 후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지급신청서 작성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 주제별정보 → 인권보호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작성양식 다운로드)

※ 지급신청서 제출 : 메일 또는 우편제출

- 메일 제출처 : cyprotection@korea.kr
(메일 송부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 02-2100-6408~9)
- 우편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우)03171

Q

포상금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수사기관
(검, 경)에
신고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
(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 제출)

여성가족부
검토
(수사결과*
확인)

포상금
지급
(신고자 수령)

*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된 사람이 해당범죄로 기소 또는 기소유에 처분을 받은 경우



Q

신고대상 범죄 및 포상금액은?

A

포상금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100만원	■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률* 제8조)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법률 제8조의2, '19.7.16. 시행)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박(竊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범죄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법률* 제14조) - 강요행위(폭행, 협박, 선불금 또는 채무관계, 위계·위력,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범죄 - 강요행위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가 그 대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범죄 ■ 알선영업행위 등(법률* 제15조) -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장소 제공을 업(業)으로 하거나,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범죄 - 성매수 장소 제공이나 알선 또는 알선정보제공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범죄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는 범죄
70만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법률* 제13조)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또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범죄

* 근거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